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

김대래 / 신라대 경제학과
배석만 / 부산대학교 강사

目 次

I. 서론.	2. 유리 공업
1. 연구의 목적	3. 석탄가공, 석유제품 관련 공업
2. 연구의 방법	4. 油脂 공업
1) 연구사의 검토	5. 기타 공업
2) 연구의 방법	IV. 화학산업 귀속사업체 제편의 전체적 경향
II. 일제시기 부산의 화학산업	V. 결론
1. 화학산업의 현황	
2. 일본인 소유 화학 사업체 검토	참고문헌
III. 귀속사업체의 접수, 관리 및 불하	국문초록
1. 고무 공업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화학산업을 대상으로 일제시기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부산의 사업체들—‘귀속사업체’라고 부름¹⁾—이 해방 후 어떤

1) 일반적으로 ‘귀속기업체’라고 부르지만, 일제말 현황을 파악하고 해방 후 접수

경로를 거쳐 한국인의 재산으로 재편되는가를 개별 기업단위로 추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일제하 산업기반이 이른바 ‘식민지유산’으로서 한국경제성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가늠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이다.

근년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주장이 매우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후 고도성장을 일본의 식민통치와 연결 짓는 이러한 역사인식은 글로벌화의 경향과 더불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 한 가운데에 귀속사업체가 있다. 즉 귀속사업체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추론에 불과할 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귀속사업체의 실태에 대한 완전한 자료가 없고, 일부 남아있는 자료들도 내용이 빈약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과연 귀속사업체가 해방 후 한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새로운 자료발굴과 개별 기업 수준에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귀속사업체의 중요한 역할을 주장하는 기존 인식을 재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사업체 하나하나에 대하여 미군정의 접수와 관리, 이승만정권에의 이전과 관리·불하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볼 것이다.

개별 기업별 분석은 전 공업을 망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화학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이 산업이 고무공업을 중심으로 일제하에서부터 부산의 주요한 산업이었기

관리·불하된 실태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기업체라 하더라도 공장 단위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귀속사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인 고무공업은 부산을 대표하는 공업으로 성장하였고, 전국적으로도 대표성을 가졌던 공업부문의 하나였다. 따라서 화학산업의 동태는 일제하에서 경제개발로 이어지는 한국산업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일제하 부산에서 일본인이 경영하였던 사업체의 실태,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귀속사업체의 접수과정에서 파악된 사업체, 이후 미군정 및 한국정부에 의한 관리과정에서의 유실여부, 이승만정권 수립이후 1950년대에 걸쳐 사업체 불하실태를 업종별, 기업단위별로 추적하여 궁극적으로 귀속사업체가 부산의 화학산업 성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파악하는데 일조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사의 검토

귀속사업체가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유행했던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규명과 관련하여 한 소재로써 다루어지면서부터이다. 즉 한국자본주의의 ‘관료성’ 내지 ‘천민성(賤民性)’을 지적하는 근거로 귀속사업체의 불하과정을 언급했다.²⁾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귀속사업체를 둘러싼 정경유착, 특혜불하를 언급했을 뿐, 귀속사

2) 주요 연구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승제, 1975, 「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총설)」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사회사상사; 정윤희, 1981, 「경제성장과 독점자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김대환, 1981,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谷浦孝雄, 1981, 「해방후 한국상업자본의 형성과 발전」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장상환, 1985, 「해방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과정」 『해방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박현채, 1986, 『한국경제구조론』, 일월서각.

업체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연구라고는 볼 수 없다.

귀속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귀속재산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대근의 연구이다.³⁾ 그는 미군정기부터 이승만정권기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의 접수, 관리, 불하 실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를 통해 주목한 것은 귀속재산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것에 있었다기보다는 귀속재산이 한국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었고, 그의 키워드는 ‘파괴와 유실’에 있었다. 즉 귀속재산이 미군정에 의한 허술하고 방만한 접수와 관리,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으로 대규모로 유실되었고 그 결과 귀속재산의 한국경제에서의 영향력은 소문만큼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대근에 이어서 귀속재산의 규모와 실체를 보다 실증적인 각도에서 본격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것은 김윤수⁴⁾와 김기원⁵⁾의 연구이다. 특히 김기원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소재하는 1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귀속재산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당시 남한 전체재산의 80%의 비중이라는 귀속재산의 규모가 정확한 것인지를 다양한 자료를 구사하여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가 추정한 귀속재산의 규모는 3,053억원으로, 남한 전체재산의 80%라는 해방공간의 일

3) 이대근, 1983,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이대근, 1988,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이대근, 1993, 「정부수립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1930~1945년』, 일조각; 이대근, 2002,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工業化의 史的背景研究』, 삼성경제연구소.

4) 김윤수, 1988, 「8·15 이후 귀속기업체 불하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5) 김기원, 1986,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論文集』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기원, 1990,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반상식이 과장된 것임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국가예산의 세출이 351억원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귀속재산의 규모가 대단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귀속재산이 관리과정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한국 경제발전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대근 주장에도 일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면방직공업 귀속사업체를 예로 들면서 ‘유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물질적인 파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속사업체의 소유자라는 프리미엄을 토대로 원조를 통한 시설복구에서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빠르게 기존 시설 이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귀속재산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귀속재산을 토대로 한국의 ‘사적 독점자본’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 김기원의 연구는 귀속재산에 대한 방대한 실증연구에 힘입어 현재까지도 귀속재산 관련이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그러나 그의 실증은 주로 해방공간 미군정에 의한 귀속사업체 접수문제 및 노동자들의 귀속사업체에 대한 공장자주관리운동에 머물렀다.

귀속사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귀속사업체의 해방 후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동욱⁷⁾과 배석만⁸⁾, 홍성찬⁹⁾의 연구가 그것인데, 귀속사업체가 해방 후 어떤 내외적 조건

6) 김기원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 자본가의 형성과 귀속재산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공제옥의 연구이다(공제옥, 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7) 김동욱, 1988, 「해방이후 귀속기업체 처리과정에 관한 일고찰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사례--」 『경제사학』 13집, 경제사학회.

8) 배석만, 1994, 「1950년대 大韓造船公社의 자본축적 시도와 실패원인-자본축적 과정에서 歸屬企業體의 역할 분석-」 『釜山史學』 25.6합집, 부산사학회.

9) 홍성찬, 2007, 「해방 후 ‘귀속국내법인’의 운영과 청산-해동흥업(舊 불이흥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0집,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속에서 자본축적에 성공 또는 실패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기업사와 경영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것은 귀속사업체가 가지는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¹⁰⁾

한편 귀속농지에 대해서도 미군정에 의해 불하될 때까지 그 총괄적인 관리를 하였던 신한공사에 주목하여 연구가 축적되었다.¹¹⁾ 귀속농지의 규모, 신한공사에 의한 귀속농지 관리운영과 소작료징수, 그리고 미군정에 의한 귀속농지 불하실태와 그 정치적 의미 등이 연구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근대화논쟁’이 가열되면서 귀속재산 문제는 새롭게 주목되었다. 귀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와 달리 이 시기 연구는 귀속재산, 특히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그 접수와 불하과정에 대해 보다 미시적인 실증을 시도하였다.¹²⁾ 이들 연구는 해방이 되었을

10) 가장 최근에 나온 홍성찬의 不二興業 사례연구는 이 회사가 미군정에 귀속되어 남한정부로 이관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의 처리과정, 즉 1973년 해산을 결의하여 2000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귀속사업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11) 김성호 외, 1989, 『한국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영목, 1993, 「미군정하 신한공사의 조직과 운영」, 건국대 석사논문; 최봉대, 1994, 『미군정기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이선희, 2002, 「미군정의 귀속농지 정책과 신한공사의 농지운영」,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2) 최봉대, 2000, 「1950년대 서울지역 귀속사업체 불하실태 연구」 『국사관논총』 94, 국사편찬위원회; 김대래·배석만, 2002(a),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33호, 경제사학회; 김대래·배석만, 2002(b),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대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經濟論叢』 20-2, 한국경상학회; 김대래·배석만, 2002(c),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전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5-5, 한국산업경제학회; 김대래·배석만, 2002(d),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광주와 목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학논집』 11-2, 한국국민경제학회; 허수열, 2003, 「해방 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 자산에 대한 분석-경상남도 지역의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김대래, 2006, 『부산 귀속

당시 남한에 남아있던 귀속사업체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것이 미군정기와 이승만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계승되었는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해방 당시 존재했던 기업의 대략 70% 정도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해방전후의 실태를 기록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통계학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성과를 참고로 하면서 부산지역 화학산업이라는 보다 작은 범위의 귀속사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식민지 물적유산의 연속과 단절을 파악해보려고 한다.¹³⁾ 이렇게 작은 범위를 잡은 것은 자료부족으로 인한 추론에의 의존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즉 연구 대상 범위가 좁아짐으로써 개별 기업단위로 저인망식 추적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단위로 분석한 연구가 도출한 70%의 접수 결과를 확인해 볼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일제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화학산업을 검토하여 해방 당시 부산의 화학산업 관련 사업체가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 검토한다. 이것은 미군정에 의한 귀속사업체 접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사업체가 미군정에 얼마나 접수되었는가를 파악한다. 셋째, 접수된 사업체가 미군정기와 이승만정권기에 걸친 관리과정에서 얼마나 유실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넷째,

사업체 연구』, 효민; 김대래·배석만, 2008,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접수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24호.

13) 필자들은 2008년 출간된 『항도부산』 24집에 이미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접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본 연구는 그 연속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미군정 소규모 기업체 불하부터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시작된 본격적인 불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불하현황을 검토한다. 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귀속사업체의 관리인, 불하인의 실태라는 인적 측면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귀속사업체의 관리·불하를 둘러싼 쟁탈전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귀속사업체의 전체적인 관리·불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우선 귀속사업체의 社名이 바뀐다던가(특히 일본식 사명은 초기에 사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방 전 하나였던 귀속사업체가 해방 후 공장 별로 분리되어 관리 불하되는 등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하여 남아있는 관련 기록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부정확하다는 것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중복기재는 물론 탈자, 오자 등이 무수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귀속사업체의 관리·불하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서 한 기업 한 기업 추적하는 미려한 작업이 기존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수치를 통계학적으로 추계하는 작업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II. 일제시기 부산의 화학산업

1. 화학산업의 현황

일제 말 부산지역 화학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전체적인 산업현황을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제시한 자료가 1930년대 말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지하듯이 식민지 朝鮮의 산업구조가 전시통제경제 구축에 따라 194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1940년대 이후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려는 것이므로 크게 무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표 1> 일제말 부산지역 산업별 비중 비교

	공장 수(個所)	비중(%)	노동자 수(人)	비중(%)
식품	107	25.4	1,738	11.4
섬유	44	10.5	4,085	26.9
금속·기계	119	28.3	2,090	13.8
화학	24	5.7	2,111	13.9
제재·목제품	42	10.0	673	4.4
인쇄제본	25	5.9	468	3.1
窯業	24	5.7	1,605	10.6
기타	36	8.5	2,406	15.9
총계	421	100.0	15,176	100.0

자료: 釜山府, 1942, 『釜山の産業』, 9~13쪽; 부산상공회의소, 1938, 『統計年報』, 169~170쪽.

주) 1. 공장 수는 1939년, 노동자 수는 1937년 현재 임.

일제 말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산업은 공장 수로는 금속·기계와 식품, 노동자 수로는 섬유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수에서 섬유산업이 압도적인데 그것은 조선 방식이라는 대규모 면방직회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금속기계와 식품은 공장 수의 비중에 비해 노동자 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는데, 소규모 공장들이 산업의 주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화학산업의 경우 공장 수의 비

중은 최하위 수준이지만, 노동자 수에서는 섬유산업에 이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지하듯이 고무신제조를 주축으로 하는 고무공업에서 대공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¹⁴⁾ 부산은 전국을 대표하는 고무공업의 메카였고, 범일동, 부전동, 좌천동 등지에 대규모 고무공장이 밀집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산업의 추이를 살펴 본 <표 2>를 통해 보다 명확히 볼 수 있다.

<표 2> 1940년 부산 주요 제조업 생산품 추이(단위 : 圓, %)

품목	가격	비중
綿織物	33,301,109	27.8
精穀	26,412,867	22.1
和酒	5,576,670	4.7
洋服類	5,436,100	4.5
고무신	5,037,321	4.2
선박	3,501,415	2.9
製菓	2,872,048	2.4
鑄物	1,994,032	1.7
琺瑯鐵器	1,923,039	1.6
綿麻製網繩	1,807,040	1.5

자료 : 釜山府, 『앞의 책』, 5~9쪽에서 작성

주) 1. ‘화주’는 일본 술을 통칭하나 생산 규모로 보아 우리 재래 술인 탁주, 약주도 포함된 전체 주조량으로 판단된다.

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고무신이 유일하게 10대 생산품에 들어 있는 것을 통해 산업의 중심이 고무공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40년대 생고무의 지역별 할당량을 보면 부산은

14) 대공장 형성에는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고무공장들의 통합·정비도 큰 역할을 하였다.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무공업의 경우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통제의 압박을 보다 빨리 받았고, 이에 따라 통합·정비가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다.

전체의 50%를 할당받고 있었고, 1942년 현재 공칭자본금 150만 원의 아사히(朝日)고무주식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었다.¹⁵⁾ 또 1940년 현재 생산액 1위는 면직물로 부산지역 섬유산업의 중심이 조선방직을 축으로 하는 면방직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직물 다음으로 부산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품목은 도정한 쌀인데, 이것은 부산항이 대일 미곡이출의 창구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일본으로 이출될 쌀이 부산에서 도정되었고, 이로 인해 항구 근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도정공장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¹⁶⁾

전체적으로 보아 고무신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지역 화학산업은 면방직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 도정과 주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과 함께 부산 지역산업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일본인 소유 화학 사업체 검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시점에 부산에 몇 개의 화학산업 관련 사업체가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주지하듯이 자료관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선택으로 일제 패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부산의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釜山府가 1942년 출판한 『釜山の産業』으로 1941년 3월 시점의 종업원 5인 이상 부산지역 사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싣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5) 釜山商工會議所, 1989, 『釜山商工會議所百年史』, 192쪽.

16) 이들 중 시미즈(清水)정미소, 모리모토(森本)정미소, 가토(加藤)정미소 등은 근대적 도정시설을 갖춘 대규모 도정공장들이었다.

<표 3> 부산지역 화학산업 사업체 현황(1941년 3월 현재)

회사명	소재지	업종	대표자
南鮮 코크스제조소	영선	코크스	森川昌雄
南鮮합동전기주식회사瓦斯	제조	가스	佐久間權次郎
丹羽木型제작소	영선	기타제품	丹羽末一
寶生고무공업소	부전	고무	栗田喜一
釜山三國상회연탄공장	昭和	연탄	橋本内荏
부산수산주식회사제빙부	대교	제빙	香椎源太郎
부산연탄제조주식회사	대교	연탄	大野増太郎
부산제빙냉장주식회사	昭和	제빙	兄部謙輔
부산화학공업소	좌천	화공품	福島徳太郎
沙上고무공업소부산공장	좌천	고무	金光玉
山峰코크스제조소	영선	코크스	峰道太郎
山下護謄공업소	榮	고무	山下新藤
三和護謄주식회사제1, 5장	범일, 좌천	고무	島野佐市
石田硝子공장	영선	유리	石田英雄
星硝子제조소제1, 2공장	초량, 범일	유리	砂川菊次
小佐공업주식회사硝子부	범일	유리	小佐助一郎
手島曹達石鹼제조소	대신	비누	手島近治
由岐위생화학시험소제약공장	적기	제약	由岐濤治
柳硝子공장	대신	유리	柳伊太郎
日光가라스제작소	영선	유리	堀家保
立石商店牧島제유소	청학	석유	立石良雄
立石商店牧島製蠟공장	청학	蠟燭	立石良雄
제국산소주식회사부산공장	당감	산소	藤井正義
조선도료유지주식회사	대교	유지	松村常三郎
조선약용유지연구소제약공장	전포	제약	門司又一
조선연탄주식회사부산공장	우암	연탄	津山箱一
조선제유주식회사부산공장	범일	제유	齊藤久太郎
朝鮮護謄調帶주식회사	좌천	고무	神田實夫
朝鮮化學礦油공업합자회사	범일	골타르계광물	橋本良助
朝日고무주식회사제1, 2공장	좌천, 부전	고무	小松壽次郎

朝日石嶮曹達제조소	대신	비누	間部利一
朝日硝子공업소	영선	유리	津田實
天一 고무공업사부산공장	부전	고무	金英俊

자료: 釜山府, 『앞의 책』, 12~42쪽에서 작성

주) 1. 업종은 비교를 위해 명칭을 일부 교정했음.

『釜山の産業』에서 화학산업의 범주에 넣은 업종은 제약, 비누, 석유, 양초, 고무, 코크스, 연탄이다. 반면 해방 후 귀속사업체 접수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본 연구에서 접수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조선은행조사부가 출판한 『경제연감』 1949년판인데—이하 ‘연감’이라고 함—, 여기서 화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업종의 범위는 좀 더 많은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작업의 편의상 본 연구는 화학산업의 범위를 『경제연감』 1949년판의 분류기준에 맞추었다. 그 결과 <표 3>에는 『釜山の産業』에서 다른 산업에 포함되어 있던 피혁, 가스(瓦斯), 제빙, 유지, 유리(硝子), 산소, 가공지, 잉크, 화장품, 비타민이 새롭게 화학산업에 추가되었다.¹⁷⁾

<표 3>을 통해 1941년 3월 시점에서 부산지역에는 총 33개의 화학산업 관련 사업체가 존재했던 것이 확인된다.¹⁸⁾ 그러나 이 중 사상고무와 천일고무의 2개 고무공업 사업체가 한국인 소유

17) 『釜山の産業』에는 제빙은 식품공업, 유리는 요업, 가스는 瓦斯전기, 제유는 기타에 포함되어 있었다.

18) 이 33개 사업체 중 동일 기업의 분공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공장은 다테이시(立石)상점, 미와고무(三和護謨), 아사히(朝日)고무, 호시가라스(星硝子)가 각각 1개씩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중 다테이시 상점의 두 공장만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하나로 보았다. 해방 후 접수현황을 기록한 『경제연감』 1949년판에서 다테이시 상점의 공장만이 업종별로 분리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므로 일본인 소유업체는 31개가 된다.

그런데 부산의 산업은 1941년 3월 현재의 현황으로 해방당시 존재한 일본인 사업체가 이것만이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 이 회사들 중에는 1945년 8월까지 사라진 회사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같은 기간에 신설된 회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은 1940년대 전반기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확도를 보다 높일 것이다.

1945년 8월 시점의 전체적인 화학산업 기업체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941년 3월 현재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 중 사라진 기업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자료를 통해 1941년 3월 이후 1945년 8월까지 새롭게 설립된 회사를 추가할 수는 있다. 첫 번째 자료는 東亞經濟時報社가 간행한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년판으로 조사시점은 1942년 9월이다. 두 번째 자료는 일본으로 철수한 일본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을 조사하는 일본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패전직후인 1946년 제출한 자료 중 회사부문을 따로 묶은 『在朝鮮企業現狀概要調書』로 1945년 8월 현재의 현황을 알 수 있다. 두 자료는 기록하고 있는 대상 기업체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들을 해당 시기 부산지역 화학산업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1941년 4월 이후 신설된 기업체를 추가하여 해방당시 실제 존재했던 일본인사업체 수에 보다 근접하는 데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자료를 통해 추가한 회사의 현황이 <표 4>이다.

<표 4> 1941년 4월 이후 신설 사업체

회사명	설립일시	소재지	업종	대표자
조선고무공업주식회사	43.11	범일	고무	稻垣平太郎
亞細亞테이프製造所(株)	42.3	소화	고무	矢野定之進
興亞고무工業(株)	42.6	범일	고무	米倉清三郎, 松本幹七
朝鮮油肥(株)	40.10	범일	비료	東四郎
興亞衛生化學工業(株)	40.7	영선	살충제	山中芳太郎
釜山製瓶所	43.2	범일	유리	淺香榮三郎
濱口製罐硝子工業(株)	41.12	남빈	유리	加藤俊次
東亞硬質硝子工業所	41.7	동래	유리	山田欽三
조선잉크주식회사	41.10	御影(영선)	잉크	橫山熊雄, 桑原榮
東亞藥化學工業(株)	40.3	대창	제약	富原研二
부산제지공장		구포	제지	津村代一
東和코르크스工業(株)	41.7	영선	코르크스	夏山佑根
朝鮮櫻商會	42.1	명륜	크레용	西村俊一
朝鮮藥粧유회사	41.6	토성	화장품	直場勝三, 酒井武雄
興亞化學工業(有限)	41.6	동대신	화장품	晝間留之助
朝陽油脂(合資)	41.10	범일	蠟燭	植月士郎

<표 4>에서 보듯이 확인된 회사는 총 16개이다. <표 3>의 1941년 3월 현재 일본인 사업체 수가 31개임으로 총 47개의 화학산업 관련 사업체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된다.¹⁹⁾ 업종별로는 앞서 부산지역 화학산업의 주축인 유리공업과 고무공업이 각각 9개, 8개로 가장 많다. 그 밖에는 연탄, 코르크스, 제약, 화장품, 비누 등 다양한 업종에서 2, 3개씩의 사업체가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47개의 사업체를 해방당시 부산지역에 존재하여 미군정에 의해 점수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화학산업 사

19) 새롭게 확인한 회사의 설립일을 보면 『釜山の産業』의 조사시점인 1941년 3월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釜山の産業』에 올라있지 않던 회사도 보인다. 단 순 누락일 수도 있고, 1941년 3월 조사시점에서는 조사기준인 5인 이상 사업체에 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업체의 숫자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의 규모이므로 이것을 일단 해방당시 부산지역 화학산업 사업체로 규정하고 귀속 사업체로 접수될 대상으로 하여 ‘연감’의 접수된 사업체와 비교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Ⅲ. 귀속사업체의 접수, 관리 및 불하

귀속사업체의 접수, 관리 및 불하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다음의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먼저 귀속사업체 접수현황, 관리인 현황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연감’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이를 주 자료로 사용한다. 불하상황과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1950년대 불하현황을 기록한 『법인대장』(발행연도 미상)—이하 ‘대장’이라고 함—이 가장 방대한 불하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료는 모든 귀속사업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완자료들이 필요한데, 조선여론통신사, 1948, 『경상남도인사록』—이하 ‘인사록’이라고 함—, 관재청, 『단기4287년 2월말일 현재(미불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이하 ‘명세부’라고 함—, 재정경제부연합청산위원회, 2000,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이하 ‘자료집’이라 함—, 국제신문 『부산의 상맥』 시리즈(1990~1991년 연재)—이하 ‘상맥’이라고 함—를 사용했다. 이들 자료는 앞선 자료들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연감’과 ‘대장’에 누락된 사업체를 찾고, 오기를 교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1. 고무 공업

일제시기 화학산업의 주축을 이룬 고무공업 관련 일본인 사업체의 해방 후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고무공업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공장	귀속사업체로 접수여부	관리인	불하인	불하금액 (천환)	불하 연월
寶生고무공업소	접수	李東仁	李東仁	950	51.3
三和護謄주식회사제1, 5공장	접수	王基英	金禮俊*	48,000	52.7
亞細亞테이프製造所(株)	접수(東-고무공업사)	金稔根	金稔根	50	48.6
조선고무공업주식회사	접수	金福守→金壽德	金壽德	1,570	51.2
朝鮮護謄調帶주식회사	접수	金丙洙	金丙洙	1,590	50.2
興亞고무工業(株)	접수	金福植**	金寬植	9,550	51.6.5
朝日고무주식회사제1, 2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山下護謄공업소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慶南合資유회사	尹昊權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南鮮고무주식회사☆	金亨德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大韓고무공업주식회사☆	金昌燁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조선타이어공업회사부산공장***	崔?夏	불명	15,000	59.3

* 김예준과 卞廷圭, 李基元, 呂德俊이 공동불하 받음.

** 金寬植과 성명불명의 1인이 공동불하 받음.

*** '명세부'에서 확인된 귀속사업체

<표 5>를 통해서 볼 때 고무공업의 경우에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제시기 존속이 확인되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접수되고, 관리를 거쳐 불하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무공장이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다른 공업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몇몇 대규모 고무 공장으로 통합·정비되었던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의 규모가 컸고, 고무신제조가 해방공간에 이른바 ‘돈 버는 장사’였기 때문에 고무공장들의 경우 그 처리과정을 세간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무공장이 불법적인 사유화, 은익을 통한 유실, 그리고 경영난과 휴업을 통한 자연유실 등으로 없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만 자본금 150만원의 대공장이었던 아사히(朝日)고무의 해방 후 처리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이 의외인데, ‘상맥’에는 아사히고무가 金壽德에게 1952년 불하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보듯이 김수덕은 조선 고무공업을 1951년 2월 157만환에 불하받았고, 아사히고무의 불하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감’에는 일제시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경남합자, 남선고무, 대한고무공업의 3개 회사가 귀속사업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는 ‘연감’에서 중앙 관재총국 대장에는 있으나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 판정하여 표시한 사업체로 다시 말해 이 자료가 작성된 1948년 시점에 이미 실체가 없는 기업이다. 그리고 세 사업체 모두 1950년대 각종 회사명부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실제로 존재한 기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한편 일제시기 자료는 물론 ‘연감’에도 나오지 않으나 ‘명세부’에서 한 개의 회사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선타이어공업회사²¹⁾ 부산공장으로 ‘대장’에는 이 사업체가 1959년 3월부로 1,500만환에 崔?夏에게 불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조선타이어주식회사의 분공장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사항은

20) 경남합자의 경우 『부산상공회의소100년사』에는 1949년 현재 朴元錫이 관리. 1952년 金秉國이 불하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1962년 소멸된 것으로 나온다(부산상공회의소, 1989, 『앞의 책』, 192쪽). 그러나 박원석과 김병국은 ‘인사록’, ‘연감’, ‘대장’의 어디에서도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21) 확인의 편의를 위해 당시 명칭 그대로 표기한다.

알 수 없다.²²⁾

고무공장은 해방 후 고무신 경기로 인해 사업체 쟁탈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관리인과 불하인의 일치에서 보듯이 의외로 안정적 경영을 보였다. <표 5>의 관리인은 ‘인사록’과 ‘연감’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최소한 1948년 이전의 관리인인데, 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체를 1950년대 불하받았음이 확인된다.²³⁾ 물론 관리인 자격에 근거한 불하 우선권을 행사하여 불하를 받아낸 것이었다. 불하는 대부분 1952년까지 완료되었고, 불하대금 상환조건은 ‘대장’에 의하면 일시불부터 10년 분할 상환까지 다양했다. 불하대금이 소액으로 일찍부터 불하가 시작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일시불, 덩치가 큰 사업체로 거액의 불하대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장기 상환이 인정되는 경향이였다. 지금도 국내 고무벨트업체의 선두주자인 동일고무의 金稔根은 亞細亞테이프製造所를 1948년 6월에 일시불 5만환에 불하받았던 반면, 金禮俊 등이 4,800만환의 거액으로 불하받은 부산지역 최대 고무신 제조업체 삼화고무의 경우 10년 분할상환이였다.

2. 유리 공업

일제시기 부산지역 화학산업에서 고무공업 사업체와 버금가는 공장 수를 보였던 유리공업의 일본인 사업체가 해방 후 어떻게 접수 및 관리, 불하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22) 이 사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全國主要企業體名鑑』 1956년도판에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대표자는 조선고무공업을 불하받았던 김수덕으로 되어 있다.

23) 관리인과 불하인이 다른 경우는 삼화고무와 홍아고무인데, 홍아고무의 경우 이름에서 보듯이 동일인이거나 같은 집안일 가능성이 있다.

<표 6> 유리공업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공장	귀속사업체로 접수여부	관리인	불하인	불하금액 (천환)	불하 연월
東亞硬質硝子工業所	접수	李炳로	金鍾吉	26	51.11
濱口製罐硝子工業(株)*	접수(東華製罐硝子공업)	李福榮	불명	22	불명
星硝子제조소제1, 2공장	접수	金永錄	金在錄	350	50.4
日光가라스제작소	접수(日光硝子공업)	불명	李白斗	30	48.7
釜山製瓶所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石田硝子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小佐공업주식회사硝子부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柳硝子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日硝子공업소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東亞硝子주식회사	불명	朴台榮	210	52.3
불명	釜山製綵硝子공업주식회사☆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日光硝子제작소(주식회사)	鄭德鉉	鄭德桂	900	52.1
불명	朝光硝子공업주식회사	金麟洙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鮮電球製造株式會社硝子공장	張稷相	불명	불명	불명

* ‘대장’에는 나오지 않으나, ‘자료집’에서 불하가 확인.

<표 6>을 통해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앞서 고무공업과 대조적으로 해방 후 접수·관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시기 자료를 통해 존재를 확인한 9개 회사 중 접수가 확인되는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4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감’에서 접수가 확인된 사업체의 전부가 불하된 것은 고무공업과 같은 양상이다.

한편 일제시기에는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가 ‘연감’에 귀속사업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도 5개가 존재한다. 이 중 ‘연감’ 기록 당시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표시 회사 釜山製綵硝子を 제외하더라도 4개의 회사가 접

수되었고, 이중 東亞硝子와 日光硝子は 불하까지 확인된다. 이들의 존재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난감한 것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료상으로 존재여부의 확인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태평양전쟁기 신설된 사업체여서,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제시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체들 중 社名이 변경되거나 또는 공장별로 분리되어 ‘연감’에 접수된 사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표 6>에서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日光硝子제작소의 경우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日光가라스제작소가 日光硝子공업과 日光硝子제작소로 분리되어 접수되고 불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인과 불하인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것은 경영권 변동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불하는 고무공업과 마찬가지로 1952년초까지 완료되었으며 불하대금 상환조건의 경우도 고무공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석탄가공, 석유제품 관련 공업

다음으로 석탄가공, 석유제품 관련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표 7> 석탄가공, 석유제품 관련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공장	귀속사업체로 접수여부	관리인	불하인	불하금액 (천환)	불하 연월
南鮮코크스제조소	접수(南鮮骸炭공업주식회사)	許五常	陳在守	1,200	52.1
南鮮합동전기(주)瓦斯제조소	접수(南電瓦斯공장)	張稷相	불명	불명	불명
東和코크스工業(株)	접수	金輔國	金輔國	160	51.4
부산연탄제조주식회사	접수	裴東錫	裴東錫	44	51.2
立石商店牧島제유소	접수(立石코크스주식회사)	불명	宋?求	250	51.3

조선연탄주식회사부산공장	접수*	불명	李炳億	4,200	54.10
釜山三國상회연탄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山峰코스제조소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東萊연탄공장(유한회사)	金麗生	金麗生	1.5	48.9
불명	新鮮연탄공장	불명	愼?晟	4,060	55.2
불명	釜山骸炭공업주식회사	宋晟求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大洋석탄공업소	鄭海永	불명	불명	불명

* ‘연감’에는 기록이 없으나 —정확하게는 ‘연감’에는 서울 의주로 소재의 조선연탄주식회사가 화학공업과 기타제조업에 중복기재 되어 있고, 조선연탄대전지점이 기타제조업에 기재되어 있다 — ‘명세부’에서 접수를 확인.

중화학 계통인 석유제품, 석탄가공품 관련사업체의 경우 <표 7>에서 보듯이 접수 및 관리, 불하가 충실히 이루어졌다.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총 8개의 사업체 중 5개의 접수가 ‘연감’에서 확인되고 조선연탄 부산공장의 경우 ‘연감’에서의 접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명세부’에서 확인이 되어 도합 6개의 접수가 확인되었다. 접수된 사업체의 불하는 남선전기의 가스공장을 제외하고 전부 불하가 확인된다. 충실한 관리 불하가 이루어진 것은 불하금액에서 보듯이 대규모 사업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감’에는 일제시기 확인되지 않았던 4개의 사업체가 새롭게 보이는데, 이중 2개는 불하가 확인된다. 또 정해영의 대양석탄공업소도 ‘대장’에서 불하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1962년 현재 정해영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불하 받은 것이 확실하다.²⁴⁾

관리인이 확인되는 사업체의 경우 그 관리인이 불하를 받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전반적으로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불하는 소규모 사업체였던 동래연탄공장이 정부수립

24) 부산상공회의소, 1962, 『부산상공명감』, 170쪽.

직후 불하되었으나, 대부분은 1952년초까지 불하되었고, 대규모 사업체인 조선연탄과 新鮮연탄의 경우 1950년대 중반에 불하되었다. 불하대금 상환조건도 앞서 분석한 공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작은 사업체인 동래연탄공장은 일시불로, 그리고 대규모 사업체인 조선연탄과 新鮮연탄의 경우 10년 분할상환이었다. 물론 불하에는 우선권이 보장되었다. 전반적으로 고무공업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4. 油脂 공업

유지공업에는 유지, 비누, 화장품, 양초 제조업을 포함하였다. 관련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油脂공업 관련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공장	귀속사업체로 접수여부	관리인	불하인	불하금액 (천환)	불하 연월
朝鮮藥粧유한회사	접수	李正昊→徐錫泰	徐錫泰	630	52.5
朝日石鹼曹達제조소	접수	林末奉	林末峰	40	49.11
興亞化學工業(有限)	접수	朴性珠	朴性洙	830	51.9
手島曹達石鹼제조소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立石商店牧島製蠟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조선도료유지주식회사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陽油脂(合資)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釜山油脂공업소	金敎哲	徐?鍵*	19,000	불명
불명	東邦油脂 화학공업소	朴聖根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半島石鹼제조소☆	金同石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半島油脂製品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協同石鹼洋燭曹達공장(協同비누)	金同石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鮮油脂회사**	金炫坤	불명	불명	불명

* 金炯?와 공동불하 받음.

** '인사록'에서 존재가 확인된 사업체.

유지공업의 경우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기업체 7개 중 3개가 접수되었고, 접수된 사업체는 전부 불하되었다. '연감'에는 일제시기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장부상으로만 확인되는 '☆' 표시의 2개 업체를 제외하면 3개 업체의 존재가 확인되고, 이 중 1개 업체는 불하까지 확인된다. 또 '인사록'에는 朝鮮油脂회사가 金炫坤이라는 사람의 관리 하에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제시기에도 '연감'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불하기록도 없다. 일제시기 존재 업체 중 접수가 불명인 4개 업체와 '연감'에서 새롭게 존재가 확인되는 3개 업체 사이에는 동일업체임에도 해방 후 사명 변경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접수와 관리 및 불하성적은 전체적으로 유리공업과 비슷한 경향으로 고무공업이나 석탄가공, 석유제품 관련 공업보다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불하가 확인되는 4개 업체 중 3개는 관리인과 불하인이 일치하여 안정적 경영권을 유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불하대금 상환조건이나 우선권 인정여부는 앞선 공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기타 공업

기타 공업에는 비료, 살충제, 압축가스, 제빙, 제약, 제유, 제지, 기타 화공품 생산 사업체를 망라하였다.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기타 화학산업 관련 사업체의 접수 및 관리, 불하상황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공장	귀속사업체로 접수여부	관리인	불하인	불하금액 (천환)	불하 연월
東亞藥化學工業(株)	접수	申世均	申世均	72	51.3
부산제빙냉장주식회사	접수	鞠金南→河國源	金聖學	310	51.4
부산제지공장	접수	丁尙澈	丁尙澈	70	49.11
부산화학공업소	접수	柳寅根	불명	불명	불명
朝鮮櫻商會	접수	尹守東	불명	불명	불명
朝鮮잉크주식회사	접수	鄭石柱	鄭石柱	65	48.7
조선제유주식회사부산공장	접수	徐寅者→徐寅洪	金英鎭	326,305	53.10
興亞衛生化學工業(株)	접수	金聲遠	金聲遠	120	51.4
부산수산주식회사제빙부	접수(大韓製氷所)**	李允榮	李允榮	4,694	불명
丹羽木型제작소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由岐위생화학시험소제약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제국산소주식회사부산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조선약용유지연구소제약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鮮油肥(株)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鮮化學礦油公업합자회사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慶南약품 공업회사	金武俊	金武俊	4,000	55.3
불명	東洋酸素주식회사(부산공장)	金奉麟	金奉麟	14,806	54.3
불명	白水製藥연구소(星光藥化제조소)	朴正根	朴正根	3,300	55.6
불명	一心화학공업사(新和化學공업소)	崔在洪	崔在洪	20	49.9
불명	朝鮮加工(紙公업)주식회사	趙東潤	趙東潤	18	49.11
불명	朝鮮肝油공장(河合製藥所)	池達三	池達三	200	50.3
불명	朝鮮비타민(제조)공장	金傑道	金燦瑱	12	48.9
불명	桂林化學工廠	徐龍澤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南鮮皮革공장	林漢澤	불명	불명	불명
불명	三和化學공업사	宋錫權	불명	불명	불명
불명	朝鮮수산업(주)수산과학공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田邊제약회사(朝鮮田邊제약)*	朴周營	朴周瀾	75	50.12
불명	경남합동공업유한회사*	曹正煥	불명	불명	불명
불명	南鮮水産開發會社과학공장*	張共수	불명	불명	불명

* ‘인사록’에서 존재가 확인된 사업체.

** ‘연감’에는 부산수산주식회사제빙부는 나오지 않으나 ‘자료집’에서 이운영에게 불하된 것을 확인. ‘연감’에는 이운영이 대한제빙소의 관리인으로 나옴으로 이운영이 사명을 변경하여 관리하다가 불하받은 것으로 판단함.

기타 공업의 경우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 약 절반정도가 접수되었고, 접수된 사업체는 대부분 불하가 이루어졌다. 또 일제시기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12개의 사업체가 ‘연감’에 귀속사업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7개 사업체의 불하가 확인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공업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연감’에는 기록이 없으나 ‘인사록’에서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도 3개가 있는데 이중 田邊제약회사는 ‘대장’에서 불하까지 확인된다.

기타 공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1948년 이전에, 다시 말해 ‘연감’에 관리인으로 등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승만정부 수립 후 귀속재산 불하과정에서 변동 없이 자신이 관리한 사업체를 불하받았다는 점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즉 유리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학산업 사업체의 관리인이 최소한 1948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였고 이 관리경력에 의거한 우선권을 인정받아 관리사업체를 불하받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불대대금의 상환조건은 앞선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IV. 화학산업 귀속사업체 재편의 전체적 경향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화학산업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에 관한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제시기 존속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는 1941년 3월 현재 31개, 그리고 이후 1945년 8월까지 신설 등을 이유로 새롭게 확인되는 업체가 16개 총 47개 사업체였다. 여기에 대해 ‘연감’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된 사업체 수는 55개였다. ‘연감’에는 중앙직할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총 67개 사업체가 기록되어 있지만, 중복 및 오분류 등을 제외한 업체 수이다. 그리고 ‘인사록’에서 4개, ‘명세부’에서 2개의 사업체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해방 후 전체적으로 접수된 사업체는 61개 업체였다. 이 상황을 업종별로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일제시기 존재확인 사업체와 해방 후 접수확인
사업체의 업종별 비교

	고무 공업	유리 공업	석탄가공, 석유제품 공업	油脂 공업	기타 공업	합계
일제시기	8	9	8	7	15	47
해방 후	10	9	10	9	23	61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보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사업체의 수가 많은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이다. 왜냐하면 기존연구를 근거로 할 경우 70% 정도가 접수되었다고 앞서 언급하였는데, 화학산업의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과 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는 70% 정도의 접수율을 근거로 일제말 기업정비 및 해방 후 혼란과 미군정의 늦어진 대응 속에서 귀속사업체가 많이 유실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관련된 자료가 없는 상황이지만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는 있다. 첫째는 전체적인 사업체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시기, 즉 1941년 4월 이후 기업의 설립이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급격했을 가능성이다. 즉 평시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통합이나 폐업을 강요받아 위축되었던 것 이상으로 전쟁관련 기업의 설립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증된다면 기존 태평양전쟁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수정이 필요해질 것이다. 둘째는 조사기준의 문제이다. 일제시기 사업체 조사자료들은 주로 회사형태를 가진 5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기록했다. 반면 ‘연감’에 접수된 귀속사업체는 영세한 개인경영사업체도 포괄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체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사업체가 공장별로 분리되어 접수·관리되고 관리·경영되었을 경우 사업체 수의 증가를 결과하게 된다. 이런 사례는 전체 귀속사업체로 확대해서 볼 경우 종종 발견된다.

다음으로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47개의 접수 및 불하실태를 종합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일제시기 존재확인 사업체의 접수 및 불하비율

	고무 공업	유리 공업	석탄가공, 석유제품 공업	油脂 공업	기타 공업	합계
일제시기	8	9	8	7	15	47
접수	6	4	6	3	9	28
불하	6	4	5	3	7	25
관리인=불하인	5/6	0/2	2/3	3/3	5/7	15/21

일제시기 확실히 존재가 확인된 기업 중 ‘연감’에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총 47개 중 28개로 60%정도이다. 접수율을 계산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가 해방 후 사명이 변경되어 접수·관리된 경우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몇몇 사례가 확인

되었지만,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된 사업체 중 접수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와 ‘연감’에 일제시대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나 접수된 것으로 나오는 사업체 사이에 일정정도 중복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접수율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업종별 분석에서도 확인했지만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 ‘연감’에서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대부분 불하가 이루어졌고, 불하된 기업의 대부분은 1948년 이전 관리인에 임명된 인물에게 불하되었다는 점이다.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 28개 중 25개가 불하되어 89%의 불하율을 기록했다. 또 ‘연감’에 기록될 당시 해당 사업체를 관리·경영한 관리인이 확인되는 것은 25개 중 21개인데, 이중 15개가 ‘연감’에 기록된 관리인에게 불하되어 1948년 현재 관리인이 불하를 받는 일치도는 71%였다. 불하율은 접수율보다는 낮지만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겠다.

화학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 1948년 시점의 기록인 ‘연감’에서 일단 접수가 확인된 사업체의 경우 정부 수립 후 1950년대 본격화된 불하과정에서 유실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1948년 현재 해당 사업체를 관리·경영하고 있던 관리인은 이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아 자신의 소유기업체로 만들었음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일제시기에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나 ‘연감’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된 사업체 33개의 불하상황 및 관리인과 불하인의 일치도를 업종별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연감’에서 새롭게 접수가 확인된 사업체의 불하 현황

	고무 공업	유리 공업	석탄가공, 석유제품 공업	油脂 공업	기타 공업	합계
접수	4	5	4	6	14	33
불하	1	2	2	1	8	14
관리인=불 하인	-	1	1	0	8	10

우선 불하율을 보면 총 33개 사업체 중 14개 불하되어 42%의 불하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의 불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현상은 매우 재미있는 것이다. 즉 ‘연감’에서 접수가 확인된 사업체 중 1950년대말까지 이어진 불하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일제시기에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연감’에서 새롭게 존재가 확인된 귀속사업체라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의 불명확성과 중복 및 오류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감’에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들은 태평양전쟁기 군수증강의 관점에서 급하게 설립된 사업체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이 태평양전쟁기 ‘급설’에 따른 불완전성과 군수산업의 평시산업으로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1950년대말까지의 재편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모리배라 불렸던 이들에 의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귀속사업체 빼돌리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²⁵⁾ 그러나 이것은 미군이 귀속사업체의 접수를 본격화하기 전인 해방직후의 상황에서 보다 심했을 것이고, 일단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유실은 크지 않았을

25) ‘자료집’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0, 『앞의 책』 참조).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1948년 이후 유실된 사업체의 대부분이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라는 것은 관리사업체의 경영부실과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⁶⁾

V. 결 론

일제시기 부산을 대표한 산업인 화학산업은 일제말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가 47개인 반면 ‘연감’에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61개 였다. 61개 사업체의 내역은 일제말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 접수가 확인된 사업체가 28개, 그리고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나 ‘연감’에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체 33개이다. 문제는 이 33개의 사업체의 정체인데, 중복, 조사 기준, 공장분리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자료로는 모든 사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시기인 1943~1945년에 신설된 사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기존 이미지와 달리 화학산업의 경우 일제말 활발한 사업체 신설이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군수공장의 ‘급설’이었을 것이다.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47개 사업체 중 ‘연감’에서 실제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28개로 60%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43년 이후의 사업체 현황을 추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기존연구의 70%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물론 사명변경의 사례를 감안하면 접수율은 좀 더 높았을 것이 확실하다. 접수된 사업체의 대부분은 관리과정에서 유실되지 않고 불하가 이루어졌다. 불하인은 1948년 현재 관리인이 불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학산업의 경우 최소한 1948년 이후로는 안정

26) 물론 이런 가정에는 구체적인 실증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된 관리권을 유지했고, 이것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불하를 받는 권리’를 획득하고 실제로 불하를 받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감’에만 접수된 사업체로 나오고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33개 중 14개만 불하가 확인되어 절반이상이 유실되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기존 연구가 많이 지적한 ‘부정부패’에서 찾지 않고 일제말 군수산업 증강의 관점에서 졸속으로 건설된 사업체가 완전한 시설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해방 후 평시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된 경제조건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유실되었다는 경제 환경과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가설을 제시해 보았다.

한편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의 관리인과 불하인의 일치도는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기업과 같은 양상으로 높았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유리와 유리공업의 접수율 및 불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업분야보다 낮았다.

전체적으로 부산지역 화학산업의 경우 해방 후 혼란과 미군정의 무책임한 접수관리로 인해 대규모로 귀속사업체가 유실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²⁷⁾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귀속사업체를 둘러싼 쟁탈전이 최소한 1948년 이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7) 실제로 미군정이 귀속재산에 대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했고, 이로 인해 귀속재산이 유실되고 황폐화되었다는 주장은 이승만정권이 자신들의 귀속재산 행정을 차별화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관제청, 『단기4287년 2월말일 현재(미불하기업체) 귀속기업체 명세부』
- 국세청, 1961,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
- 국제신문, 1991, 「부산의 상맥 시리즈」
- 국회재경위, 1955, 『귀속재산 대규모 기업체의 우선적 매각진상에 대한 조사보고』 대한상공회의소, 1956, 『전국주요기업체 명감』
-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년판
- 釜山府, 1942, 『釜山の産業』
- 부산상공회의소, 1989, 『부산경제사』
- 부산상공회의소, 1938, 『統計年報』 .
- 부산상공회의소, 1962, 『부산상공명감 1962』
- 재무부, 연도미상, 『법인대장』 .
-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2000,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별책 1~4』
-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2000,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 조선여론통신사, 1948, 『경상남도인사록』
-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연감』
- 조선총독부, 1946, 『在朝鮮企業現狀概要調査』
- 고승제, 1975, 「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총설)」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사회사상사.
- 谷浦孝雄, 1981, 「해방후 한국상업자본의 형성과 발전」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 공제욱 외, 1998, 『1950년대 서울의 자본가』 서울학연구소
- 공제욱, 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 김기원, 1986,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論文集』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기원, 1990,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사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 관리 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 김대래, 2006(a), 『부산 귀속사업체 연구』 효민
- 김대래, 2006(b), 『해방직후 부산 경남의 공업』 효민
- 김대래 · 배석만, 2002(a), 「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 전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 김대래 · 배석만, 2002(b),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 광주와 목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학논집』
- 김대래 · 배석만, 2002(c),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상논총』
- 김대래 · 배석만, 2002(d), 「귀속사업체의 탈루와 유실(1945-1949)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 학』 .
- 김대래 · 배석만, 2008,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점수에 관한 연구」 『항토부산』 24호
- 김대환, 1981,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 김동욱, 1988, 「해방이후 귀속기업체 처리과정에 관한 일고찰 --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사례--」 『경제사학』 13집, 경제사학회
- 김성호 외, 1989, 『한국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수, 1988, 「8·15 이후 귀속기업체 불하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박원표, 1967, 『항토부산』 태화출판사
- 박현채, 1986, 『한국경제구조론』, 일월서각.
- 배석만, 1994, 「1950년대 大韓造船公社의 자본축적 시도와 실패 원인-자본축적과정에서 歸屬企業體의 역할분석-」 『釜山

史學』 25,6합집, 부산사학회.

- 이대근, 1983,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 이대근, 1988,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 이대근, 1990, 「해방 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처리 과정」
- 안병직 외 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
- 이대근, 1993, 「정부수립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 이대근, 2002,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工業化의 史的背景研究』 삼성경제연구소
- 이선희, 2002, 「미군정의 귀속농지 정책과 신한공사의 농지운영」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장상환, 1985, 「해방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과정」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들베개
- 정윤희, 1981, 「경제성장과 독점자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들베개
- 최봉대, 1994, 『미군정기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최봉대, 2000, 「1950년대 서울지역 귀속사업체 불하실태 연구」 『국사관논총』 94, 국사편찬위원회.
- 최영목, 1993, 「미군정하 신한공사의 조직과 운영」 건국대 석사논문
- 허수열, 2003, 「해방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 자산에 대한 분석-경상남도 지역의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1권 제2호
- 홍성찬, 2007, 「해방 후 ‘귀속국내법인’의 운영과 청산—해동흥업(舊 불이흥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0집,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화학산업을 대상으로 일제시기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부산의 사업체들이 해방 후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인의 재산으로 재편되는가를 개별 기업단위로 추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군정에 의한 접수과정에서 대규모 ‘유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제시기 47개의 사업체가 확인되지만, ‘연감’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된 사업체는 61개였다. 둘째,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 ‘연감’에서 접수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대부분 불하가 이루어졌고, 불하된 기업의 대부분은 1948년 이전 관리인에 임명된 인물에게 불하되었다. 셋째, 일제시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감’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된 사업체는 불하과정에서 대규모 유실이 있었다. 넷째, 관리인과 불하인의 일치도는 높아서 최소한 1948년 이후 해당사업체의 관리권을 장악한 사람의 경우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했고, 이를 이용해 해당 사업체를 불하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화학산업, 귀속사업체, 유실, 연속, 단절

【Abstrac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Vested Firms in Busan, 1945–1960

–In the Case of chemical industry–

Kim, Dae-rae / Bae, Suk-man

This study aims to track down by which routes the enterprises in Busan own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had been reorganized as the property of Koreans, by focusing on chemical industry in an individual firm unit.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are proven. First, it is hard to find evidence for large scale ‘loss’ in the process of the registration led by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47 enterprises are confirmed to have exis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but 61 enterprises were registered on the ‘1948 yearbook.’ Second, among the enterprises whose exist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has been confirmed, most of the enterprises on the yearbook were disposed of. The majority of the disposed enterprises were disposed of to the person appointed to a manager before 1948. Third, among the enterprises on the yearbook despite the fact that their exist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has not been confirmed was large scale loss in the process of disposal. Fourth, the agreement of manager and the person to whom an enterprise was disposed of was so high that those who seized the power of an enterprise after 1948 maintained a stable status; this stable status demonstrates his or her ownership of a disposed enterprise.

Key words: chemical industry, vested firms, loss, continuation, severance